

# 방배그랑자이 예비입주자 추첨 및 계약 안내문

## 1. 예비당첨자 추첨 및 계약 안내

- 공급방법 : 예비순번 순서에 따라 미계약 세대 동·호수 공개 추첨  
(잔여세대 부족시 후순위 자는 배정이 안 될 수 있음)
- 공급일시 : 2019년 6월 07일(금) 11:00 (10시부터 입장 가능하며 11시 이후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)  
※ 상기 일정은 서류접수 과정 중 추가로 발생하는 부적격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공급장소 : 방배그랑자이 견본주택 (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19, 3층(대치2동, 자이갤러리))  
※ 공급대상 세대는 정당당첨자 계약 및 부적격세대 소멸기한 이후(2019.6.05.) 확정됩니다.

## 2. 사전서류접수 기간 안내

1차 : 2019년 5월 22일(수) ~ 5월 25일(토)/오전 10시 ~ 오후 4시(5/26~5/29는 정당계약 업무로 서류접수 불가함)

2차 : 2019년 5월 30일(금) ~ 6월 05일(수)/오전 10시 ~ 오후 4시

- 예비당첨자에 대한 서류 확인은 예비당첨 추첨 이전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.
- 소명서류는 해당기간 내 방배그랑자이 견본주택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(2019.04.25) 이후 발급 분에 한하며,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발급시 아래 항목을 필히 포함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 
(1. 해당지역 전입일자 / 2. 세대구성 사유 /3.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/ 4.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/ 5. 주소변동 이력)

## 3. 유의사항

- 예비당첨자 본인 이외(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)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합니다.
- 예비당첨자 동·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·호수를 배정받아 공급계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계약 미 체결 시 예비당첨자 권리는 무효 처리됩니다.
-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, 주택소유여부, 부양가족수, 재당첨금지 등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 계약이 취소됩니다.
- 추첨에 참가하여 동·호수를 배정받은 예비당첨자가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첨자로 관리되어, 해당 청약통장은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고 당첨사실 및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.
- 상기일 오전 11시까지 견본주택에 입장하지 못하여 예비당첨자 본인 호출에 응하지 못하는 예비당첨자는 예비 당첨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기타 계약과 관련된 세부사항(추가선택품목 등)은 기발송 해 드렸던 「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안내」 및 방배그랑자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 4. 예비당첨자 추첨시 구비서류

본인참석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신분증 / 인감도장</li><li>1차 계약금 및 별도품목 계약금 (현금수납 불가, 계좌이체 준비) ※ 별도품목에 대한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므로 미리 계약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/li></ul>
대리인 참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본인 참석시 구비서류 외 추가 서류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예비입주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(추첨 및 아파트계약 위임용) ※용도는 본인이 직접기재</li><li>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</li><li>위임장 (당사 견본주택 비치)</li></ul></li></ul>

## 5.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사전 서류 접수 안내

### ■ 구비 서류(계약서류)

구분	구 비 서 류
공통	• 인감증명서 1통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/용도 : 아파트 계약용) ※용도는 본인이 직접기재
	• 인감도장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)
	•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	• 주민등록표등본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세대구성사유, 세대주 및 세대원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)
	• 주민등록표초본(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)
	• 가족관계증명서(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를 표기하여 “상세”로 발급)
	• 출입국 사실증명원(최근 2년)
해당자 구비 서류	• 복무확인서(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)
	• 가족관계증명서(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)
	•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(거주기간 및 세대주 기간 확인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)
	• 혼인관계증명서(본인 또는 자녀) -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-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• 직계존비속 주민등록표초본 1통 -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- 직계존속 3년간 거주확인, 직계비속은 만 30세 이상자 1년 등재 확인사항
	•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초본 - 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3년간 거주확인)
부적격 통보를 받은자	•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접수일 기준) 또는 건축물대장(처리일 기준, 가옥대장 등본 포함)
	•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
	• 소형·저가 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
	•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제 3 자 대리인 신청시	• 계약자 인감증명서 1통 추가(용도 : 계약 위임용) ※용도는 본인이 직접기재
	• 계약자 인감도장
	• 위임장(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)
	•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

※ 모든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19.4.25.)이후 발급분에 한함.